

이사회 운영규정

제정 2020. 12. 01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노을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이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 (이사의 구성)

-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③ 이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주관부서인 컴플라이언스 그룹에서 지정한다.

제4조 (이사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,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④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 소집 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5조 (의장)

이사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,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이사의 성립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.

제7조 (이사회회의 결의방법)

-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.
- ② 이사회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.
- 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④ 이사회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.

제8조 (이사회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2.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
3. 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보수,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
6. 신규사업 및 투자, 매각,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
7. 신주의 발행, 주식의 발행, 사채의 발행,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
8. 이사회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9.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
10. 기타 법령,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 (이사 아닌 자의 출석)

이사회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,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 (이사회회의 장소)

이사회회의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.

제11조 (이사회회의 의사록)

이사회회의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이사회회의의사록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주관부서)

이사회회의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경영지원본부에서 이를 관장한다.

부 칙

제1조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